토마토홀 대관 규약

제 1 조 (목 적)

본 규약은 주식회사 토마토클래식(이하 ‘방송국’)이 운영하는 토마토홀(서울 마포구 양화진4길 32 지하1층 소재)의 대관 및 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관의 정의)

대관이란 공연, 연습, 녹음, 녹화 기타 행사 등을 위하여 토마토홀의 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 조 (대관료)

① 대관료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.

② 대관자는 대관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대관료의 3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, 대관일 30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한다.

③ 천재지변(지진, 기상이변, 예견되지 않은 정전 및 단수, 폭동) 및 불가항력 또는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방송국이 대관자에게 납부액의 100%를 반환한다.

제 4 조 (대관 취소 및 변경)

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방송국은 기 납부액의 50%를 반환한다. 단, 대관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소 시에는 납부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일정을 변경할 시에는 대관자가 방송국에게 대관료의 10% (부가세별도)에 해당하는 일정 변경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.

제 5 조 (관리의무 및 손해배상)

① 대관자는 토마토홀의 시설 및 설비 사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. 대관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, 즉각적인 손해 배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대관자는 방송국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 6 조 (대관승인 취소)

① 대관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

② 대관승인 후 정한 기일 내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
③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
④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행사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

제 7 조 (기술지원)

① 공연의 기술지원 및 효과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송국에게 통보해야 하며,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공연 당일의 기술지원 요청과 특수효과는 진행할 수 없다.

제 8 조 (공연진행)

① 공연이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관객의 중간입장은 중간휴식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없는 것으로 한다.

② 토마토홀은 취학 전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며, 입장 연령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화환과 음식물은 토마토홀에 반입할 수 없다.

④ 출연진이 15명 이상 일시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입장권의 발행)

① 입장권의 발행은 방송국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. 입장권 발행 전에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 대관자는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‘갑’은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.

②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.

1.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하다. 단,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다.

2.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 할 수 있다.

3. 공연장안에서는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촬영 및 녹음은 할 수 없다.

4. 음식물, 카메라, 꽃다발은 객석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.

5. 휴대한 휴대용 전화기의 전원은 가급적 끈다.

6. 공연장 로비 및 건물 내부에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.

③ 입장권은 객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.

④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‘갑’은 교환권에 의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

제 10 조 (계약의 해제)

방송국과 대관자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, 또는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방송국에게 유.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11 조 (기타)

① 본 규약은 방송국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,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

② 본 규약은 2021년 1월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.